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661
----------	-------

발의연월일 : 2026. 7. 1.

발 의 자 : 박홍배 · 송재봉 · 한준호
민병덕 · 이정현 · 홍기원
박 정 · 김우영 · 김남근
정태호 · 윤준병 · 안도걸
이광희 · 이정문 · 김기표
최혁진 · 허성무 · 부승찬
김문수 의원(19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의 도산 또는 임금 지급능력 상실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생계비 용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플랫폼노동, 프리랜서, 문화예술 분야 등 비전형 노동이 확대되면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수 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

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용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근로자등”의 개념을 신설하여 「고용보험법」상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나. 사업주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다.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 라. 체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생계비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퇴직”을 “이직(離職)”으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자를 사용하여”를 “근로자등에게 임금등(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 아”로 한다.

1의2. “근로자등”이란 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제2항 중 “근로자를”을 “근로자등을”로 한다.

법률 제2137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 제목 중 “퇴직한 근로자에”를 “이직한 근로자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 “그 근로자의”를 “그 근로자등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5호 중 “근로자에게”를 각각 “근로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의 퇴직”을 “근로자등의 이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퇴직한 근로자와”를 “이직한 근로자등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퇴직한 근로자가”를 “이직한 근로자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퇴직한 근로자에”를 “이직한 근로자등에”로 한다.

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6개월분의 보수

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보수

제7조의2의 제목 중 “재직 근로자에”를 “계속 종사 중인 근로자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를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와”를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로, “근로자의 임금이나”를 “근로자등의 임금등이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급한다”를 “지급하며,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가 퇴직”을 “근로자등이 이직”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로 한다.

4.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미지급 보수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보수 미지급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보수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

제7조의3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못한 근로자”를 “못한 근로자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을 “이직한 근로자등을”로,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 대지급금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보수 산정 방법 및 체불 확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및 제7조의3에 따른 용자는 보수의 체불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8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근로자가”를 “근로자등이”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근로자의 보수총액에”를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등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근로자에게”를 “근로자등에게”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단서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등에”로 한다.

제23조제1항제7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등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의”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종료의”를 “또는 노무제공관계 종료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등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근로자”를 “근로자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근로자는”을 “근로자등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대지급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등에게 보수등의 미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3.·4. (생략)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③ (생략)

법률 제2137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에 대

같다)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노무를 제공받아-----
-----.

3.·4.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자등을-----

-----.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376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이직한 근로자등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

---이직한 근로자등이-----

-----그
근로자등의-----

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5조에서 같다)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 3. (생략)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 바. (생략)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등에게-----

가. ~ 바. (현행과 같음)

5. -----근로자등에게-----

② -----

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신설>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신설>

③ (생략)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 . -----

근로자등의 이직-----

1.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6개월분의 보수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보수

③ (현행과 같음)

④ -----

④ -----

이직한 근로자등과-----

⑤ -----

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

이직한 근로자등이-----

⑥ -----이직한 근로자등이-----

⑦ -----

-----근로자에게-----

⑧ -----이직한 근로자등에-----

제7조의2(계속 종사 중인 근로자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보수 중 지급받지 못한 보수

③ -----
-----근로자 및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근로자등의
임금등이나-----

-----.

④ -----

-----지
급하며, 이직하지 아니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
-----근로자등이 이직-----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
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
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
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
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
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
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
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

-----.

③ -----

--근로자에게-----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에 대한 특례) ①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 지급

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 대지급

금 지급 요건의 세부 사항, 보

수 산정 방법 및 체불 확인 절

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②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대

지급금 및 제7조의3에 따른 용

자는 보수의 체불 사실이 객관

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

--근로자에게-----

-----근로등이-----

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② (생략)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고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의2(변제금의 징수) ① -----

-----근로자등에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근로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대지급금수급계좌) ① -----

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② (생략)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

근로자등의

근로자등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등은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 근로자등은

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2. (생략)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 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

1. 2. (현행과 같음)

② -----

-----근로자등-----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
-----근로자등에게-----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의 용도) -----
-----.

1. 2. (현행과 같음)

3. -----

따라야 한다.

1. ~ 7. (생략)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 다. (생략)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
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자료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
16조의10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
용관계 종료의 신고에 관
한 자료

바. ~ 아. (생략)

7의3. 「고용정책 기본법」 제1

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체불사업주등 및 대지급금 청
구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자료

가. ~ 다. (생략)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

-----근로자등-----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근로자등

의-----

마. -----

-----근로자등의-----

-----또는 노무제공

관계 종료의-----

바. ~ 아. (현행과 같음)

7의3. -----

-----근로자등-----

가. ~ 다. (현행과 같음)

8. -----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9. ~ 1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1. 체불사업주,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3. (생략)

③ (생략)

제25조(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

-----근로자
등의-----

9. ~ 12. (현행과 같음)

② -----

1. -----
근로자등-----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신고) -----

-----근로자등은-----

구할 수 있다.

-----.